

【서산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심 사 보 고 서

2003. 7. 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3. 6. 25.
- 나. 제출자 : 성두현 의원외 5인
- 다. 회부일자 : 2003. 6. 26.
- 라. 심사기간 : 2003. 7. 1.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 : 박상무 의원)

가. 제정이유

-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에 헌신함으로써
-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구현과 열린의정 실현을 통하여 의회 위상과 의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지켜나가야 할 윤리강령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서산시의회윤리강령안을 마련하고 의원모두가 준수토록 함(안 제1조).
- 청렴의무, 직권남용금지, 직무관련금품 등 취득금지, 기밀의 누설금지, 사례금 수수금지, 겸직금지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과 관련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은 소명, 관련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
-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함(안 제10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하는 행위와 과도한 경조금품 제공이나 허례허식을 금지토록 함(안 제11조).
- 의회의 각종회의에 성실히 출석하도록 함(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금번에 자체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규범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 윤리실천규범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4조 「의원의 의무」와 기타 관련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음.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및 소수의견

- 없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 56 호
의 결 년 월 일	2003. . . (제 회)

서산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발 의 자	박상무의원의외 5 인
발의년월일	2003. 6. 24 .

서산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의안 번호	56
----------	----

발 의 자 : 박상무의원의외 5인

발의년월일 : 2003. 6. 24.

1. 제안이유

-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에 헌신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구현과 열린의정실현을 통하여 의회위상과 의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지켜나가야 할 윤리강령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서산시의회윤리강령안을 마련하고 의원모두가 준수토록 함(안 제1조)
- 나. 청렴의무, 직권남용금지, 직무관련금품 등 취득금지, 기밀의 누설금지, 사례금 수수금지, 겸직금지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다.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과 관련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은 소명, 관련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
- 라.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함(안 제10조)

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하는 행위와 과도한 경조금품 제공이나 허례허식을 금지토록 함(안 제11조)

바. 의회의 각종회의에 성실히 출석하도록 함(안 제12조)

3. 참고자료

가. 윤리강령(안)해설

나. 충청남도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

다. 시·군의회별 윤리강령안(태안군, 과천시, 부여군, 파주시의회)

서산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제1조(윤리강령 준수) 서산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서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공·사생활에 있어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 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직권남용금지) ①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기업체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직무관련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공무상의 기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련규정이나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8조(겸직금지) 의원은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재산등록)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기부행위의 금지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규정하는 행위와 과도한 경조금품의 제공이나 허례허식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회의출석) ①의원은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와 공무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②의원은 선거구 활동 또는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나 활동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의회규범 제1호)

이 규범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